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은 틈틈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

배포 시

배포

2025.4.2.(수)

담당부서

자본시장감독국
증권거래감독팀책임자
담당자국장
팀장임권순
김용진(02-3145-7580)
(02-3145-7590)

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보다 손쉽게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.

-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요건 완화 등 -

-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,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습니다.
 -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‘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’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·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1

추진 배경

- 그간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“외국인 주식 통합계좌” 제도 도입(‘17년), 보고의무 완화*(‘23.6.) 등 제도 개선을 지속 해왔습니다.

* (기존)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즉시(T+2) 보고 → (개선) T+2일 보고의무를 폐지, 최종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통합계좌 명의자가 매월 증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 모니터링

[참고1]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

- ◆ (개요) 다수의 외국 개인들(최종투자자)이 개별적인 한국 계좌 개설 없이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·결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*(Omnibus Account)
 - *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형태와 동일
- ◆ (제한) ①외국인 취득한도가 존재하는 종목의 거래 금지, ②공매도 불가

- 다만,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(이하 '통합계좌') 실적이 全無하여 이에 대한 추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- 업계 의견 수렴 결과, 現 규정상의 통합계좌 개설 요건^{*}이 다소 엄격하며,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개선 필요사항도 발견되었습니다.
 - *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
-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 리테일 고객을 보유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및 국내 증권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.

2

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제도 개선 방향

- ①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,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.
 - (계좌개설 요건완화) 현재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,
 -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(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)
 - 이와 함께,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-해외 증권사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.
 - (가이드라인 마련)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지속 협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합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,
 -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, 고객확인의무,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Q&A 등을 마련하겠습니다.

② 우선적으로, 금일(4.2.) 금융위는 위 제도개선 방향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

* 제도개선 전이라도 他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동 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·지정하겠습니다.

[참고2]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개요

◆ 해외 증권사(홍콩 소재)가 통합계좌(Omnibus Account)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*

* 금융위는 통합계좌 개설 요건(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)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

③ 금융당국은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,

-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 필요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

3

기대효과

□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,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·결제*를 할 수 있는 등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하고

* 국내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형태와 동일

-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